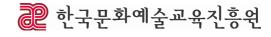
문화예술 교육 포럼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일시: 2009.2.26(목)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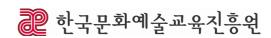




문화예술 교육 포럼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일시: 2009.2.26(목)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행사내용

「문화예술교육 포럼 -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

2009 문화예술교육의 전망과 비전			
14:00-14:05	사회자: 문화예술교육포럼 안내		
14:05-14:10	인사말: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14:10-14:15	인사말: 김보성(2008 문화예술교육포럼 대표)		
14:15-14:20	축 사: 신중석 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과장		
14:20-14:40	제1발제: 문화정책에서 예술강사 육성지원의 전망과 과제 오세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장		
14:40-15:00	제2발제 : 학교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망과 과제 김숙정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사회:	
15:00-15:20	휴식	이원현	
15:20-15:40	제3발제 : 기초·광역센터의 역할정립과 정책과제 김보성 2008 문화예술교육포럼 대표		
15:40-16:00	제4발제 :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방안 양병찬 공주교대 교수		
16:00-16:30	종합토론 - 토론자 이경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장 신은경 한국무용교육학회 회장 서권수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임재춘 옥천모단스쿨 기획실장		
16:30	폐회		

목 차

I. 인사말 ······	·· 5
이대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오세곤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장	
Ⅱ . 제1발제 ····································	8
- 문화정책에서 예술강사 육성지원의 전망과 과제 -	
오세곤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장	
Ⅲ .제2발제 ····································	12
- 학교정책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망과 과제 -	
김숙정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V . 제3발제 ····································	15
- 기초·광역센터의 역할정립과 정책과제 -	
김보성 2008 문화예술교육포럼 대표	
V. 제4발제	23
-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방안 - 양병찬 공주교대 교수	
0 0년 0 1 표계 표기	



인 사 말

겨우내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차가운 바람이 그 말미에 매서운 바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요즘, 문화예술교육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과 함께 학교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군부대, 교도소까지 다양한 곳에서 문화예술의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80억 원의 사업 예산에서 2009년 6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2008년도에는 전국 총 초·중·고등학교 중 33%에 달하는 3,713개의 일선 학교에서 우리의 앞날을 짊어질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 누가나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전국방방곡곡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돌파구로서, 사회구성 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정책, 현장, 이론단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실행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문화예 술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고,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논의되어야할 정책을 논의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와 전망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와 함께 문화예술교육담론 활성 화 차원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거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그 수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2010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 관계자 및 기관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논의 가능한 이슈를 결집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공감하고 서로의 고견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이대영



인 사 말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전 국민이 그 안에서 행복하며 온 나라가 그 안에서 도약할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아직은 다듬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축적된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살피고 보완할 점을 찾아 보완하며 한 단계 전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선 교육인력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학교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 분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생산적인 의견 이 많이 개진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들에 대해, 또한 행사 준비에 노심초사하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회장 오세곤



발제 자료



Ⅱ. 제1발제

문화정책에서 예술강사 육성지원의 전망과 과제

오세곤 | 순천향대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회장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학술지 이름은 '모드니예술'이다. '모든 이를 위한 예술'을 줄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 그런 명칭이 탄생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국민은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즐기는 데에는 감상뿐 아니라 체험까지 포함된다. 바로 이 감상과 체험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바로 교육이라 해도 무방하다.

예술인은 누구나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때 교육적 기능은 당연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전문예술인 양성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건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전문예술작업에 전념하느라 예술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술계 전체로는 일반인에 대한 예술교육 기능이 상 당한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예술 관련학과가 너무 많다는 말들을 한다. 또한 예술인이 너무 많다고도 한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할때 결코 많지 않다.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외부 요인으로 그런 상황이 와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기회로 활용될 수 없다.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즉 모든 이들이 예술교육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상당 부분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을 위한 준비란 무엇보다도 교재(프로그램)와 교육자다.

현재 교육인력의 중심은 단연 예술강사이다. 결국 예술강사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1. 교육자의 현황

1) 교육자의 종류

현재 예술강사는 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쪽에서 활동하는 5개 분야의 예술인들이다. 5개 분야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이다. 여기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쪽의 강사와 일부 지역 문화예술기관이나 문화재단 등에서 자체선발해 활용하는 강사를 더해야겠지만 앞서 5개 분야의 경우 중복이 많고 음악, 미술 등의 강사 수효는 전체적으로 보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그래서 현재 예술강사는 대충 4천명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 예술강사의 출신 성분은 장르 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악과 연극은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 예술인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전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무용과영화, 만화애니메이션은 전공자가 많다. 무용은 음악 미술처럼 거의 전공자들로 현장예술계가 형성되므로 당연하고, 영화와 만화애니메이션은 현장 작업자들이 예술강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급속히 늘어난 전공학과 졸업생들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예술강사 중 교직이수자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 물론 당연히 선발에 있어 우대가 있지만 원래의 비율이 대학 입학 정원 대비 10%인데다 무용은 오랜 전부터 동결된 상태이고 그나마 만화애니메이션은 아직 교직 과정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예술강사의 역사는 불과 10년 남짓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종류로 보자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다양한 주체들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극에는 예술강사 파견사업 이전부터 활동하던 교육연극 활동가라는 그룹도 있다. 그중에는 아우구스트 보알의 방법론을 따라 형성된 단체도 있고 구미 쪽의 교육연극 이론을 받아들여 활동하는 그룹도 있다.

여기에 중요한 그룹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각급 학교 연극반 지도교사들이다. 크고 작은 연극 교사 모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극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연 활동까지 벌이기도 하는 이들은 일반인을위한 연극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각 장르마다 다양한 교육인력이 존재하는데 초중고 지도교사 그룹은 거의 공통적으로 모두 있고, 그 외 유치원이나, 청소년 수련관, 보육원, 복지관, 쉼터 등에도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의 기반을 가진 인 력들이 예술을 활용하여 활발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교육자 훈련 현황

우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들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선발 후 2년여에 걸쳐 140시간의 연수를 받는다. 물론 진흥원으로 일원화되기 전에 시작된 국악과 연극, 영화의 경우 140시간으로 확립되기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으므로 선발 년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이렇게 고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예술교육 강사나 지역 단체 강사들도 나름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그런데 전공자들의 경우 교직이수자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 몇 년 된 일이지만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교직 과목 이외에 '교육'관련 과목(예술치료 포함)이 개설된 학교는 극히 드물었다. 교직정원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 하겠다.

이에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예술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 예술인 양성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에서는 그 방법론이 어떠냐가 곧바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교육자 대우 현황

현재 예술강사의 보수는 시간당 4만원이다. 최초 3만여원으로 시작하여 장르에 따라 한 때 최고 6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으나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 흥원에서 여러 장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장르간 형평성 문제로 4만원으로 고정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 해 맡게 되는 수업 시수는 장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게는 68시간에서 최대 400시간 정도이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 1년 272 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 정도 보수가 지급되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 원거리출강의 경우 교통비가 추가되지만 거의 실비 개념이므로 수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런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보수 기준은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타 사업 강



사들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예술강사들의 수입은 월 평균 20여만 원에서 최대 150만원 정도가 고작이니 전문 인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것이 현실이다.

2. 향후 교육자 양성의 방향

1) 교육자의 종류

몇 년 전 문광부 용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등교원 양성 및 재교육 방안연구-연극, 영화, 무용을 중심으로-"를 수행한 적이 있다. 이때 중 등교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인력에 관한 구성을 제안하였는데, 대강 인력을 3 트랙으로 구분하는 방안이었다.

우선 교직이수자들은 정규 교사 트랙으로 유도한다. 그를 위해 중등학교가 담당 교사를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교과로서 '예술 관련 교과' 담당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 학년에서도 여러 교과 중 예술 관련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술을 수단으로 타 교과를 운영함에 있 어 중요한 협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여 러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는 순회교사제도도 당연히 고려할 만하다.

두 번째는 예술인으로서 교육 활동에 중심을 두는 트랙이다. 다양한 통로로 예술계로 진입한 현장예술인 중 일부와 예술 관련 전공 졸업생으로 교직 이수를 안 한 이들에게 적합하다 하겠는데 초중고학교에서 주로 교과나 재량 수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활동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트랙인데 이 경우 주로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도를 맡으며 학교에서 필요로하는 다양한 예술 관련 사항을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에 예술교육 학과들이 개설되어야 하며 중등교사 양성을 위해 사범대학에도 예술교육학과 들이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랙의 인력들이 전문교사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교육자의 훈련

이제 예술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은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 즉 교직 이수자가 아니더라도 예술 관련 초중고 교재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교육 대상으로서의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인전반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나아가 각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법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아울러 위의 두 번째, 세 번째 트랙에 해당하는 예술인들도 일반인을 위한 예술 교육 전반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거나 아니면 이미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능히 사용할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지침이미리 축적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집체식 연수보다는 상시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어디서나 가능한 대체 연수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즉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연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의해 다양한 선택을 해서 이수한 뒤 인증을 받는 것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청소년교육, 사회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예술교육 방법론 제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한 영역 다툼을 벌이 기보다는 언제라도 요청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올바 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 교육자의 대우

몇 년 전 국회에서 전국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한 명씩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1년 예산 약 2000억이라는 수치까지 나왔지만 그 이상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예술강사에 대한 계약제 논의가 있었다. 4대 보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이골자였는데 월 급여 150만원에 10개월 계약이므로 1년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다.

물론 이 제도도 준비가 미흡하여 유보되었다. 앞서 제시한 3개 트랙 중 2번째 트랙에 적절하다고 하겠는데 향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앞서예술강사 최대 시수를 약 400시간으로 했던 것도 실은 계약제가 됐을 경우 1



년 수입과 비슷하게 맞춘 결과라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위의 3트랙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랙의 보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두 번째 트랙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수를 부여하면서 기간제 교사 내지 그에 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 번째 트랙은 시수를 연간 약 100시간 정도로 하고 시간당 보수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려 최소한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몇 시간 수업을 맡긴다는 개념보다는 특별활동 내지 동아리를 맡아 지도하면서 그 학교의 예술 관련 모든 일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제2발제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망과 과제

김숙정 |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1. 시작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한 노력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내 아이만 행복하면 된다는 부모의 이기주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단순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하고, 조언하고, 치료하는 사후약방문식 교육활동보다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교육정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추진방향과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제시해 봄으로써 체득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풍 토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사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전문가가 특정 공연장에서 공연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 되는 소극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교과교 육 및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지도자 소양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지도되고 있으며 일 부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가 지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 지 못함에 따라 그 성과 또한 미미한 편이다.

1) 공교육 내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부족

가) 초등학교

- 음악 교과 내 국악이 40% 포함되어 있으나, 국악수업 진행이 가능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함
- 전문미술, 고전 및 현대무용, 교육연극, 오케스트라 등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개설 이 없는 실정

나) 중·고등학교

- 대부분 음악, 미술, 무용(체육 포함) 교사가 있으나, 국악, 연극 등 예술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



2) 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과 편성 미흡

- 전문인력 부족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소양 부족으로 교육과정(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편성 미흡

3) 문화예술분야 학교교사 전문화 과정 미흡

-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고 미술, 음악, 체육 등 일부 예체능 교과에 편성해서 지도해 오고 있음

4) 국악, 연극 등 특정분야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미흡

- 지방의 전문 예술강사 인력풀 지원부족으로 수혜율 미흡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과 시수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활성화 미흡, 지방의 전문 예술 강사의 효율적 활용 부족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미흡

-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한 기능 습득으로 이해하는 수준

나. 추진 방향

교육업무의 시도교육청 대폭 이관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1) 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자체·언론사 등과 파트너십구축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공동 지원 방안 마련
- 2) 일선학교와 지자체, 지역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단체)확보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재정 확보 필요
- 3)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육성, 선도학교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집중 지원을 통해 우수 성공사례 창출, 지자체 민간기업 등 범사회적 참여 확산
- 4) 지자체 참여 유도 (현행 국악분야 → 전 분야 확대)

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인식제고와 자체 프로그램 개설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가능 문화예술교육 인력풀 구축, 관련 프로그램, 지원가능 범위 확정→ 단위학교 정보안내→ 학교교육과 연계한 희망 일시 확인(연간계획)→ 조정→ 파견 및 활동

2) 학교급,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개발 및 교사 연수

- 운영방법 : 재량활동 전일제 운영, 예체능 수업시간 (특정부분, 실기 및 이론 포함) 담당교사와 공동 진행
-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액 수익자 부닦
- 4) 문화예술교육 인력풀 구축, 방과후학교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희망강사 공모→연수→학교안내)
- 5) 학교유휴 시설을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 전액 수익자 부담
 - 지자체 주최, 시민단체 및 언론사 주관, 교육청 후원
 - 지역 문화예술 인력풀 활용
 - 오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오후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지자체, 지역문화예술교육 주관단체, 유관기관(문화회관, 박물관, 예술대학 등) 등 과의 협력연계 체제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라. 지역대학 평생학습센터 및 예술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 강사 양성 및 활용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 1) 여름, 겨울방학 중 대학연수센터를 활용한 교사 실기연수 지원
 ·영역별 자율공모→ 희망자 선정→ 연수비 지급(학교자율연수경비 활용)→ 연수 실시→ 이수증 발급(문화예술교육단체, 해당대학 센터장)
 - 2) 교육연수원 과정별 교수요목에 문화예술교육 과정 운영(2시간 이상)
 - ※ 강사 : 문화예술 전문가 초빙
 - 3) 여름, 겨울방학, 토요휴업일, 단기방학 등을 이용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체험 캠 프 운영: 희망자 중심
- 마.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운영
 -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연수회 등 이용
- 바.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운영(학교시설개방, 지역문화센터 운영 필수)
 - 토요휴업일, 방과후, 여름 겨울방학 중 집중 운영
 - 각종 기자재 대여 및 학습자료 공유센터 운영
- 사.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례 발표회 : 자율참가, 교육감상 시상
- 아. 지자체 문화예술과 협력 및 후원 유도



2. 나오며

대략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만큼 할 일도 많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 실질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참다운 교육의 본모습 찾기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운영으로 청소년 진로직업교육 및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기회 마련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 정체성확립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Ⅳ. 제3발제

기초·광역센터의 역할정립과 정책과제

김보성/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사무국장

1. 머리말

지난 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는 중앙 집중적 정책의 수립과 일방적 지역분산의 반 복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느리지만 분명한 흐름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이러한 경향은 완 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두 축은 정책 기조가 살 아 숨 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 등)과 개발된 교과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진을 포함한 매개자 층, 즉 교육과정과 전문인력의 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일이다. 물론 삶터와 일터가 일치되는 지역 터전을 중심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이래 처음 5년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유일한 중앙센터로서 각종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기본 정책을 실행하면서 소위 Top-down 방식을 통하여 기본 틀을 형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발 제문은 중앙지역센터 주도로 형성되어 온 시행 초기의 정책기반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 가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을 통한 정책의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고 제언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 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지역센터의 정책 과제 현안

2-1. '지역사회학교' 개념의 새로운 인식

점점 늘어나는 공공문화기반시설들과 그 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강좌 프로그램들, 특히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정책적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공공문화기반시설(지역문화센터 등)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필수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학교'라는 원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50년대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필자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해 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학교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원적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이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필요한 것이다.

2-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지역 - 예술강사 파견과 지역협력모델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보다는 학교로 파견되는 예술강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아직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미학적 성찰과 교육방법론으로 현직 교사들의 교과운영의 틀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물론 훗날 교사 대부분의 교육방법론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전문교사로서 예술가들이 '학교내 예술가 상주제도'(영국의 사례) 형식으로 필요한 고유 활동영역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예술강사 파견제도는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예능학원식수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과 대부분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현행 학교수업의 기존 틀을 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시도한 사례로 본 발제자가 주관한 경기문화재단의 2007년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생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지역에 뿌리내린 안정되고 지속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역량을 형성하는 일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이다.

'지역협력 지원사업'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역에 뿌리내리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이 집중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사업인 것이다.'



물론 진흥원에서도 지역협력모델 사업을 개발·실시하고 있지만 능력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한 단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사업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양적 성과에 비해 지역안착형 사업주체의 발굴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경기도 지역 역시 이러한 한계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기존 학교지원사업은 먼저 예술강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연수교육을 제공하여 희망지역의 학교로 배정하는 형식이라면, 지역협력 지원사업은 1년 80시간짜리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법의 요점은 예술강사 파견사업이 대부분 1인 예술강사에 의존한 기능식 수업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비해,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자로 참가하게 된다.

물론 현행 예술강사 파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1인 예술강사 단독의 프로젝트 응모도 열어놓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여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주는 심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학생들은 1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명의 예술가들과 만날 수 있고, 예술적 기능강좌 이상의 다른 교육적 감동과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된다.

또 지역안착형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응모를 격려하게 됨으로써 지역과의 결합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술강사 파견제도가 지역(과 해당 학교)에 대한 지속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역협력 모델 지원사업은 대안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광역지역센터가 지정되고 나면 진흥원으로부터 내려받게 될 사업 중에는 권역별 예술강사 운영·관리 업무가 있다. 지금까지 진흥원이 전국적인 규모의 예술강사 파견업무를 중앙에서 전담함으로써 과도한 업무하중에 시달려 왔고 상대적으로 정책개발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으로 이양되는 예술강사 지원업무는 앞에서 지적한 한계를 지역별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강사들의 지역전담제 및 프로젝트형 학교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예술강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권장해 본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지역센터의 정책 과제 현안

3-1.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변화

원래 문화예술교육이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전 국민을 위해 열려있어야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모두 교육수혜의 대상이어야 한다. 정책 실시 초기 5년 동안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부예산의성격(지원사업에 투여되는 기금의 성격)이 복권기금인 이유로 지원대상이 사회소수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환경조성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한 일반 시민 대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영역이 매우 협소해진 것이다. 지역사회학교의 새로운 중심축인 사회문화예술교육 환경의 위축은 곧 학교문화예술교육 환경의 악화와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나게 된다. 왜냐하면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별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먼저 활성화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부분 전환되어 범국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1-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대학교육의 변화

사회학자 Martin Trow 교수의 고등교육체제 단계이행론 ¹⁾				
대학진학률 15% 이내	지배층이나 전문직의 양성 목적	엘리트형(Elite System)		
대학진학률 15 ~50%	모든 화이트칼라의 직업준비 목적	대중형(Mass System)		
	고도산업사회 시민육성 목적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교육의		
대학진학률 50% 이상		기회를 보장하는 범용형		
		(Universal-Access System)		

위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1995년에 55.1%에 이르러 이미 범용형 교육체계로 들어섰으나 기존 입시제도 등 현 대학체제는 과거 엘리트형 체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대학 역시 범용형 교육단계에 요구되는 평생학습²⁾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해질 것이고 나아가 일반 국민에 대해 보다



¹⁾ 황홍규(2002),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의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11-12

²⁾ 앞의 자료집. 3쪽,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 25세에서 64세까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5.4%로, 미국 34%, 프 랑스 40%, 독일 33%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대학의 폐쇄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방적인 운영체제로 자기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향후 광역지역센터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미래의 대학사회가 만들어가야 하는 모습을 이미 앞장서서 실천하며 지역 모든 연령의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범용형 교육체계를 지역거점 별로 구축 하며 존재 의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당장 현실화될 수 없을지라도, 가능한 지역부터 광역지역센터는 관내 각급 대학(교)와의 교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학교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사범대학교의 교사양성 과정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지역센터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대학(평생교육대학) 과정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프로그램들과 대학의 관련 학과끼리 공동학점 교류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관문을 넓혀가는 촉매작용을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관계

무엇보다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학교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역량이 먼저 성숙되어야만 한다.

지역사회학교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의 성숙이란 즉 지역의 특성(문화지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사와 전통)에 충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잘 가르칠 수있는 (지역 내) 교·강사 인력 층이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지역NGO단체 등에 골고루 충분히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풍부하게 형성된 전문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력 등이 지역마다 형성 되어 있다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의 안정적인 공 급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광역지역센터의 역할모델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역지역 내 기초단위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앙지원센터』의 축소된 역할'을 자임하며 관내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①지역센터 또는 협력단체들과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하며, ②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자 또는 수집가로, ③문예교과 연구개발 연구소로, ④강사 발굴 및 양성기관으로, ⑤기초단위 지역센



터(또는 지역협력단체) 발굴·확장 및 지속적 관리자로 활동해야 한다. 또 문화예술교육 교 과개발 및 교육철학 연구과제 등을 개발·공모하여 ⑥민간의 문예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위 한 아웃소싱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반대로 기초단위 지역센터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확대된 기초지역센터』로서 중앙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와의 업무교류도 활발하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4-1. 광역센터의 교육과정을 통한 기초단위 활동역량 만나기

지역센터의 강좌유형은 크게 대중교양강좌 과정과 전문강좌(재교육 과정 포함) 과정으로 분류된다. 발제자는 광역지역센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중교양강좌 과정을 직접 개설하 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지역센터 또는 기초지역센터가 없는 경우 지역의 문예교육활동 단체들과 광역지역센터가 처음에는 '공동주최3)' 형식으로 지역에 개설되는 교육과정 전반을 함께 준비하며 사업의 공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매우 힘든 과정이기는 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그동안 막연히 쌓여있던 지원기관의 상급기관이자 권력기관으로서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활동주체들과의 신뢰관계도 매우 돈독해지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역단체와의 업무신뢰가 확보되면 차츰 지역단체에게 예산 및 교육과정 직접 운영 및 교육대상 지속관리 등의 역할을 가능한 전적으로 일임한다.

이처럼 교양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조건이 성숙되면 전적으로 지역단체에게 모든 역할을 일임하는 반면에, 전문가를 위한 과정의 경우는 광역(또는 기초) 지역센터가 교과과정 운영전반을 직접 관리하면서 대외적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

전적으로 일임하거나 반대로 직접 관리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지역 활동주체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형식(순회방문,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만남으로써 광역센터의 혹시 모를 지나친 주도성을 억제하고 지역의 자발성을 유지 또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조절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³⁾ 광역지원기관과 기초지자체 활동단위가 대등한 협력관계로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실제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광역단위 지원인력들에게 부과되는 업무하중은 매우 커서 향후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을 시도할 때 매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4-2. 기초지역센터 후보군 발굴을 위한 광역센터의 노력

경기지역 문화예술교육 원년이랄 수 있는 2003년 초 기전문화대학의 최초 행보는 31 개 시·군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단체)들을 다각도로 수소문하고 발품을 팔며 직접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만난 지역협력단체들과 이후 3년간 기전문화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가(단체)에게 의뢰해 만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주최'로 실시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 1년에 1~2회씩 문화예술교육 실무자워크숍을 1박2일 과정으로 진행하며 지역·인적 교류 및 활동정보를 공유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역별 협력단체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모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역공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기도 하며, 문화예술교육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연결고리를 찾아 함께 공동과제를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네트워크화 된 지역단체들을 특성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자체 문화재단(부천, 고양), 교육운동시민단체(의정부, 하남, 이천), 방과후 학교(안성), 대안미술공간(안성, 안양, 양평), 평생학습기관(광명, 고양), 문화원 또는 문화의집(광명), 마을문고(용인), 지역공공문화센터(군포), 사설민간예술단체 및 공간(가평, 안산, 여주, 양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지역거점기관도 있고 지역거점보다는 program provider 성격이 더 강한 곳도 있으며, 거점보다는 일시적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미리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함께 실천영역에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열어놓고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광역단위)지원기관 종사자들이 단위현장 활동가들에 대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이들 중에 기초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주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맡을 수 있어야 한다!!) 광역단위 지원센터 와는 서로 보완 가능한 역할분담 모형을 세워야 한다. 광역지원센터가 행정지원업무를 맡아주고, 기초단위 민간영역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중심의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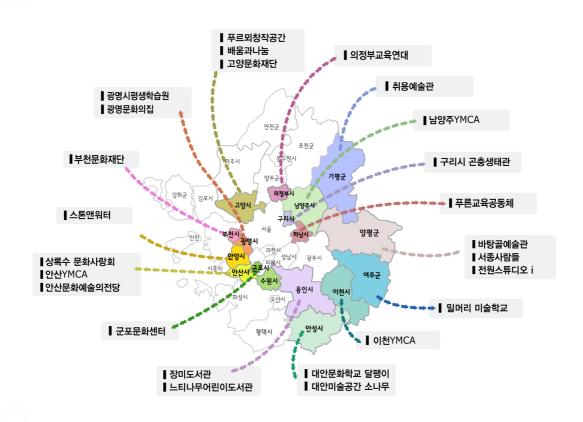
4-3. 관계맺기의 진화과정 - 지역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앞의 과정에서 지원기관인 지역센터와 지역협력단체들 사이의 업무적인 신뢰관계가 차 츰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지원사업 형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별 현장에서 축적된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험을 토대로 바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사업화 하는 방안이 그 중하나이다.

문화예술교육의 '교재 및 교육지침서 모델 개발'사업이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근원적 문제해결의 또 다른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재 개발과 그에 따른 교·강사 인력 양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시행하면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인지역현장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일을 중앙단위 또는 광역단위 조직에서 자임하려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시행착오를 무릅쓰고라도 광역과 기초 단위의 지역센터의 역할분 단 모형에 대한 실험을 가능한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씨를 뿌려 기르되 '인위적 부양'의 화학비료 보다는 '자생력'이라는 퇴비를 거름으로 천천히 튼실하게 성장하도록, 밭갈이부터 재배 전 과정을 지역실천단위와 늘 함께하는 지역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지금 시기 문화예술교 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양한 사례로 숨 쉬고 있는 중이다. 프로그램 개 발과 그에 따른 교육지침서의 개발 그리고 필요한 강사인력을 양성하거나 외부에서 수급 하는 일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인 것이다. 바로 그것은 문화예술교육 의 양적 확산을 위한 질적인 토대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 2003-2004 경기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역 및 단체 >

5. '지역센터'의 발전 방향

5-1. 지역센터의 역할분담 모형

지역센터가 위와 같이 지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기초지역센터가 중앙센터로서의 진흥원 및 광역지역센터와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 열거된 기능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매개인력 포함) 양성 기능이 기초지역센터 및 중앙과 광역 지역센터의 고유 임무로 어떻게 나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가능한 그 지역에서 양성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 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과 가장 밀착된 생활단위로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급 단위별 지역센터 역할모형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5-2. 지역센터 지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광역단위 지역센터는 대개 중앙으로부터 공급되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사업예산과 일상적인 운영조직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될 것이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은 강력한 지원체계에 의해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은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좋은 강사진이 문예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어 무상으로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늘 바람직하기만 하거나 또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치능력 향상에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원예산이 많을수록 또 양질의 프로그램일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지원사업 종료 이후 지역의 교육사업 환경이 그나마 지원사업 실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작은 단위지역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가 결합될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자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물론 실제 지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 또는 스스로의 유지를 위한 활동 일체를 포기하고 인력양성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주체는 생각보다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지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단체조차도 이 문제는 그다지 녹녹한 문제가 아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지원사업을 2-3년 지속하고 반드시 매 교육기수마다 현장 인턴쉽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수료증(경력증명)이 발급되도록 하여 일정규모의 전문인력이 현장에 쌓이게 되고 강사활동의 반복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광역과 중앙 지역센터에 연수원 체계를 열어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순차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우려처럼 이러한 순차적 진행의 역순으로 인력양성체계가 가동되면 현장에 뿌리 내린 인력양성이 되지 못하고 단순 교육이수 자격증만 갖춘 떠돌이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결국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이들의 취업활동을 위한 취로사업으 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지금처럼 중앙 단위에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다음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결과의 단기적 성과에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일반적인 교육활동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조급한 교육사업의 확장을 자제하고 충분한 교과개발 노력과 실험의 반복을 통한



시행착오, 정책 수정, 그리고 양질의 교·강사의 확보 및 연수 환경이 성숙된 단계에서 비로소 확대실시를 해야만 지속성을 보장받게 된다.

6. 마무리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역센터'는 광역단위 보다는 기초지방정부와 그 이하 더 작은 단위별 구성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한다⁴). 특히 단기간 내 양적 확산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지역별로 문예교육 사업에 대한 헌신적인 파트너쉽 형성에 일차 주력해서 소그룹이지만 충 실도가 높은 1차 파트너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제가 법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다만 교과연구개발 및 지역에 산재된 다양한 좋은 사례의 수집과 분석, 연구 활동 등도 아직 미비하고, 따라서 이러한 개발 성과로 나온 교과내용을 제대로 지역에 전수할 교육전담인력의 훈련 및 재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항에서 법적 보장의 중요성이 우선 고려되다보면, 직제보장제도의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교과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시험 운영을 통한 문제점이보완된 이후 직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성패도 정책입안과 실행, 교육담담인력과 기획인력 등 양질의 전문인력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에 달렸다. 이제 막 꽃피우려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이 분야에 종사할 인력의 참여자격에 문턱을 높여 엄선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성과보다는 최소 요건만을 마련하여 기본 소양교육만 이수하면 원하는 누구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활동 정도와 지속성은 일선 교육현장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으로 소수의인력만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문턱을 높이는 제도로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원하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의 취지이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원하는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고 기본요건만 갖추면 원하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에 대한 평가는 교육현장에 맡겨두는 열린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중앙과 광역의 지원센터는 주로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 (연구개발, 네트워킹 지원, 재교육·연수교육 체계 마련 등)에 전념하고, 실제 교육은 가능



^{4) [}문화의 집] 정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 최소단위의 구체적 지역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걸맞은 사업 발전 형태일 것이다. 아무쪼록 기초 지역센터가 현재보다 더 작은 단위로 무수히 확산되는 성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기획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실적인 제안을 해보자. 현행 실시 정책으로는 기초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에 기초지역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초지역센터를 구성함에 있어 소위 정부의 연립내각 구성하는 것처럼 문화활동권역별 활동주체들의 연합으로 기초지역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모든지역마다 인적 구성이나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역센터 지정이 의미 없다. 지역마다 다양한 전문성과 다양한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연대 가능한 인력들끼리의 조합으로 기초지역센터의 업무특성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대구성 방식은 자칫 지정받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외감과 지역분열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될 수도 있으며 부족한 지역의 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광역지역센터는 전국 동시실시 계획에서 부분시범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광역지역센터 시범사업의 주체로 지정된 단체들에 대해 적합한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지만 전국적 전면 확대실시 정책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면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그나마 다양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축적하며 전국 확대 시행시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전화위복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역지역센터 역시 이미 컨소시엄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듯이, 특정 단체에게 전권을 주는 방식보다는 지정의 일차적 책임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부차적 책임을 공유하는 연대방식을 제안한다. 기초지역센터보다는 광역지역센터가 컨소시엄을 통한 연대방식이 더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대방식을 중앙정부의 지정 원칙으로 지침화 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광역단위에서 자발적인 연대활동의 결과로 실현되는 모양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V.제4발제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안

양병찬/ 공주대

0.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

- 1990년대 중반 지방 중소도시의 대학에 처음 발령 받고서 문화원 찾은 경험
- 2003년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각 교육단계에서의 인문학 활성화 프로젝트 중 「평생교육단계에서의 인문학 활성화 방안 연구」(이해준 교수 책임) 참여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즐거운학교만들기 방안 연구 :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중심으로」(김춘미 교수 책임) 참여
- 2000-현재까지 몇 몇 중소도시(군포, 부천, 이천, 창원, 금산, 진천, 시흥 등)의 평생학습도시 종합 계획 프로젝트 책임
-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는 우리 딸

I.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

1.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을(Culture & Arts Education for All)

- 우리들에게 문화예술은 고상해서 너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돈 많고 여유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기는 고정관념
-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편치 않음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삶을 반영
- UNESCO 제4회 세계성인교육회의(1985년 3월 파리)에서의 학습권 선 언⁵⁾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배움'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서 이를



⁵⁾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권은 "읽고 쓸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 및 집단적 역량을 발달시킬 권리"로 규

통해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함. 문화예술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 대중 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 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즉 매일 매일 우리 '마을'에서 문화예술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보편화(universal화) 하자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이 요청됨

2. 문화향유자이며 문화창조자, 국민의 문화 재생산력 강화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감수성을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개입하는 활동으로서 문화적 향유자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문화생산자, 문화창조자로의 성장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1항에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향유와 함께 스스로의 창조적 능력을 갖게 됨
-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은 주로 행위자의 것 혹은 소비재로 인식해온 경향이 강했으나, 이제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 전문 인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해당 문화 분야의 학습자인 아마츄어에서 매니아로, 다시전문가로)
- 지역이 가진 풍부한 문화콘텐츠를 교육과정으로 녹여내고, 학습참여자들 은 자발적으로 후속 '학습동아리'로 매개되고, 이들의 활동이 자원봉사조 직으로, 전문 강사진으로서 연계,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전 과정이 설계되어야
-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

정되어 있음.

확장, 연대성 강화,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역, 계층의 차별 없이 누구나 시민사회의 주 체로서 문화향유자이며 동시에 문화창조자로서 국민의 문화 재생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 및 참여의 보편화를 지향하 는 정책이 요청됨

Ⅱ.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숙제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2003년 문화부 내의 문화예술교육 TF설치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발표
-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⁶⁾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학교교육 분야와 사회교육 분야로 나누어 영역화 하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육법의 개념을 채용하는 것으로 학교와 사회로 교육 활동 영 역을 나누어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임
- 기존의 문화정책과는 다르게 문화예술적 경험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교육)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정책 방향이 큰 의미를 갖음. 단 속적이고 무계획적인 문화예술 경험에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감격(문화예술경험)+계속적 경험(지속적 성장이라는 교 육의 본질에 기반)이 만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2.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지난 3년간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의 성과(통계 생략/직접 지원사업 만 명시)



⁶⁾ 일부 실효성이 낮은 조문과 타 법령과의 관련성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예술강사 지원 (2000-),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2005-), 사회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2006-)
-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창조적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우수 운영학교 지원(2006-), 관련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005-)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마련되어 최근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양적 확대에 대한 통계만 있을 뿐 문화감수성의 증진에 대 한 성과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서광, 2008 : 92)
-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종합하면, 1)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강사 지원사업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일자리 창출의 명분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동인이 되었다는 평가(양지연, 2008: 56)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교육부와 문화부의 MOU에도 불구하고 연계사 업으로서의 시너지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의 본 사 업에의 낯설음과 예술강사-교사 간의 협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의 문제들(정현선, 2008: 20)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임학순(2008: 42-44)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주문하였고, 전문 인력양성 및수급 체계화와 교육대상 집단의 확대 등을 제언. 유아 및 일반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사업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
- 김영현(2008: 68)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로 지적하면서7)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라고

^{7) 1.}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었다는 전제/ 2.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복원기금을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으로 제한 되어 실행/ 3. 일자리 창출 경로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풀어내는 학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인력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출동 야기/ 4. 장르별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영역의 정착은 균질의 교육내용을 전제로 콘텐츠의 획일성을 낳았고, 대상과 환경을 고려 않는 교안을 요구하게 됨/ 5.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콘텐츠 개발과 현장의 경험들이 기계적으로 정리되고 교안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진정성과 소통의 깊이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6.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대한 가치인정 기준이예술 강사 지원사업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임

○ 우주희(2008: 47)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안점이 참여 기회 확대에 둘 것인지 내실화에 둘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기반 하에 질높은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 양성을 우 선적 과제로 삼은 후에 그것을 확산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회 적 작동원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결론

3. 기존의 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 사업 전달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원과 문화의 집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복지관이나 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지역에서 문화기반시설은 주민의 문화공간인 동시에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장(場)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의 책무성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기반시설의 주안점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음
- 문화의 집의 경우는 지역 문화원과의 차별화와 함께 프랑스형의 문화교 육센터를 도입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 역량의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의 전달체계가 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사명과 전문성에서 문화예술'교육적'특성을 보여야하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더욱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대체로 해당 기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어 지역 거점 센터로서의 네트워 크 역량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동안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 을 지원하는 메타 역할을 한 경험이 일천하며 본 사업 체계 속에서 전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부족하였기 때문



Ⅲ.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스템 변화

- 1.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의 전달체제 답보 상태
- 사회교육법 제정 전후의 배경
- 1980년 개정 헌법에 국민의 평생학습권 조항 신설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교육법(안)에 있었던 지역 주민의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관'설치 규정이 삭제(국회의 예산 부담)
- 공적 사회교육의 전달체제가 없는 사회교육법은 법적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음(일본의 사회교육법은 '공민관법'이라고 규정할 만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가능성과 한계
- 1980년대 중반 이미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는 급증하는데 반하여 공적 사회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민간의 문화센터나 대학평생교육원이 그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였음 -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 전면 개정
- 전달체계로서 평생교육 전담기구화 : 중앙의 평생교육센터 → 시도교육 청 차원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시군구 교육청 차원의 평생학습관
- 예산 확충 미비로 인하여 기존 기관들이 기능 부여하는 것으로 출발함. 중앙평생교육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학생회관이 나 거점 도서관, 대학평생교육원 등에,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지역의 도서 관 등 평생교육 담당 기관들에 사업비 지원으로 출발함
-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3대 전담기구의 두 축으로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은 전담 기관이 아닌 기존 시설에 복합적인 기능 부여의 형태로 시작됨
 - 전국의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 총 23개 중 전담형 기관은 7개, 대학평생교육원 7개, 도서관 8개 등이었음

<표 1>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현황

구분	평생학습관 (전담형)	도서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문화원	계
기관수(개)	7	8	7	1	23
비율(%)	30.4	34.8	30.4	4.4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평생교육백서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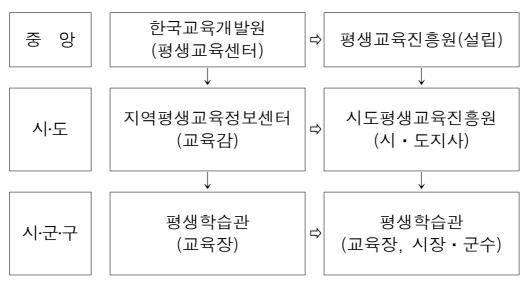
-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가 급증함과 동시에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면서 평생교육적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전달체계가 없는 것 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
- 기존 시설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빠른 확산을 보였으나 내적으로 평생 교육에 대한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한계가 노정됨(기관 사명 부족과 전문성의 보장이 안 되는 지속적 시스템적 한계)
-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으로 일반 행정 체계와의 협력 시작
- 이러한 한계에 일부 교육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등)이 평 생교육전담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 기존의 전달체계 중에서 학교 교육을 전담하고 있던 교육청 시스템은 평 생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음.
- 그런데 200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메타 사업이 출발하였고 이에 지자체의 평생교육 허브센터로서 의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등 명칭 다 양)가 설립되거나 운영되고 있음

3.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과 전달체제의 강화

- 2007년 12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은 기존 평생교육전담체제인 평생교육센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지역평생학습관의 그 동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독립기관화 등의 보강된 전달체계를 규정함
- 전달체계는 중앙 차원에서의 독립기관으로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시·도지사 소속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그리고 지역의 평생학습관 등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그림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평생교육 추진 체제의 변화

4. 전달체제의 구조

가) 중앙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중앙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기존의 평생교육센터에 학점은행제센터와 독학사운영본부 등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고 그 조직은 경영기획실, 평생교육정책본부, 학점은행운영본부, 학위관리상담본부로 구성.
- 그 주요 업무는 ① 국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③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④ 법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⑤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⑥ 제20조에 따른 시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⑦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⑨ 제23조에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⑩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나) 시·도 차원의 지역평생교육진흥원 설치

-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시·도지사 소속하의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역할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상호 연계 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시·군·구 차원의 지역평생학습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함(제16조 2항)
-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제15조)
- 시·도교육감과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제21조 2항)
-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328개 기관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시·군·구 평생학습관(혹은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문화센터 등)은 127개 소에 이름(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09).

5. 외국의 평생교육전달체계(양병찬, 2003)

- 일본 : 1949년 사회교육법에 의거하여 공민관을 중학구 이상에 하나씩 두어 주민의 문화교육 담당
- 기초 단위 생애학습센터(사회교육센터, 시민교육센터, 중앙공민관 등)-공 민관
- 시도 (도도부현) 단위 허브 센터로서의 생애학습센터



- 독일 : 지역 단위에 시민대학(VHS: Volkshochschule)을 운영하여 생활권 단위에서 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포함)과 직업교육, 사회적 과제 교육 등 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호주 : 성인지역사회교육센터(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Centres and colleges)가 지역 주민들(아동 포함)한 문화기반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⁸⁾
- 이외에도 영국의 성인교육센터,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중국과 대만의 사구교육(社區敎育)센터, 베트남의 지역사회교육센터 등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생활권 전달체제임. 프랑스는 문화의 집, 이탈리아는 민중의 집이라는 이름의 주민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음. 여기서는 대체로 특정의 교육내용만을 전달하지 않고 종합적인 교육내용을 담당함

Ⅳ.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가능성

1.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영역의 높은 비중

-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관은 문화원을 비롯하여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청소년수련 관 등의 청소년시설, 여성회관 등의 여성시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함. 이와 함께 예총이나 민예총과 같은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문화기반 시설인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 관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시설인 평생학습관(지역 주민자치센터 포함), 도서 관, 대학평생교육원 등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운영
-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영역의 프로 그램 개설과 참여가 활발함. 2008년 평생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운 영 프로그램 84,836개 중 문화예술 관련 영역(인문교양교육 포함)이 40,713개(48.0%)로 나타남
 - ※ '08년 운영 프로그램 84,836개 : 직업능력향상교육 21,294개(25.1%),인문교양교육 21,014개(24.8%), 문화예술교육 19,699개(23.2%), 학력보

⁸⁾ 거대 도시(캔버라 등)인 경우에 문화예술센터에서의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운영하고 있었음

완 19,007개(22.4%), 성인기초문자해득 2,638개(3.1%), 시민참여과정 1,184개(1.4%)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한계와 교육부의 관점

- 현재 주민들의 생활권에 근접한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편차가 심각함
- 전반적으로 교양수준으로 한정되거나 단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위주라는 한 계를 안고 있음
- 단위 지역에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간의 중복성도 심각
- 중급 고급 등의 향상 프로그램이나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음
-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소비적'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의 욕구와 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중앙 부처간 의 정책 성과에 대한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보장이 어려운 형편
- 이의 해결을 위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견인하여야 하며,
- 국민 문화예술교육 저변을 확대(질적 고급화를 포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술가들 중에서 교육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창의한국'라는 관점에서 접근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면 문화부와 교육부 간의 일정한 협의가 요청됨.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문화 소비자적 관점에서 문화 창조자로서의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신념이 요청됨



3. 강화된 지역 중심 평생교육 기반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가능성

-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추진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2008년 현재 전국에 76개가 지정되어 있음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시설 및 인적 물적 자원을 평생교육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더불어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평생교육적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도에서 관할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법 제 20조)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상호 연계 체제 구축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 중심 기구로서 기능할 것임
- 2009년까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된 현재의 기관들은 지정 기간이 만료되며, 2010년부터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건하여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이에 문화예술교육지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단체들의 지원하는 메카 사업을 담당하는 중심센터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하여 직업교육, 사회통 합교육 등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 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거점 역할에 유리
- 평생교육 3대 전담기구의 두 축인 지역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평생학습도시사업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영역 중심의 접근, 관련 기관 중심의 접근 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V. 문화예술교육 전달체제로서의 평생교육시스템 활용방안

1.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의 재구조화

○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은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적 규정, 정책 실제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 립에서 출발하여야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 따라 서 현재 특정 대상(사회취약계층 중심)을 겨냥한 문화예술교육의 차원을 넘어 서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현하기 위해 정책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지역의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됨
- 전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기회접근에 취약 한 교육취약계층의 기회확대를 위한 기반조성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층의 문화예술교육의 접근기회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2. 기존의 교육 전달체계인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 문화예술교육적 활력을 넣어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달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 존의 교육 전달체계를 적극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아야
-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이나 클럽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는 현재의 복지시설의 활용은 제한적 대상(사회 취약계층 등)의 경우일 것이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삼는 전달체제인 평 생교육기관과의 연계 구조를 찾아야 할 것으로 평가됨
- 문화의 집을 비롯한 생활권 문화기반 시설을 문화교육센터로서 역할 규 정하면서 정책을 투입하는 것이

3. 대상별 생애주기교육방식과 지역의 생활세계중심적으로 접근

-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주민들의 자기주도적인 문화감수성 향상이라고 할 때, 문화 예술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생애단계별 교육 기회가 통 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 민들에게 그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 요구와 전달 가능한 체계를 고려한 사 업 추진
- 교육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 정적 활동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도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과 생애주기 별로 교육활동이 설계되어야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지원(주로 강사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유아부터 성인, 노인기까지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접근방식이 요청

-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교육과정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활동과 연계 가능 하도록 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문화예술교육이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접근 가능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영역 즉 직업교육, 여가교육과는 달리, 지역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모델이 구상되어야 함.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강사 자원 역시 지역 자원을 강화하는 것이 요청됨

4.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의 불명확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심의 지원체제가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동하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임
- 중앙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친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광역지역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 협력망을 구축 운영해야(구체적인 업무는 총괄기획,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개발보급, 조사·연구 등)
- 전국 단위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
-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역시 기관의 사명이 문화예술교육에 있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에 평생교육 전달체계 활용
-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관들이 선정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 현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들이 하나의 유형이 되겠고, 전국에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정보센터나 최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도청 산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포함될 수
- 현재 평생교육 영역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약 1/2)에서 현재 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강사

- 풀, 프로그램 뱅크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
- 현재 76개 평생학습도시나 지역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에는 위의 프로그램이나 강사 풀, 홈페이지 등이 존재하며 지역 전체 기관단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의 위계와 역할 예시
- 가) 중앙 단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 센터와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역할) 사업 총괄 기획,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보급, 조사·연구 등
- 나) 시·도 단위: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운영 기관을 센터로 지정
 - □) 문화재단(서울이나 경기 등)
 - L) 시·도청의 지역평생교육진흥원(시·도 교육청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역할) 해당 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해 지자체의 사업 개발 및 예산 확보, 사업 DB/프로그램뱅크/강사 풀, 지역 기관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 등
- 다)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사업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의 경우는 지역 메타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 다른 지역의 경우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원 이나 문화의 집, 평생학습관 등
- (역할) 이 지역 전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관장하고 지역 사업 수행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시해야
- 마) 지역의 사업 단위 주체: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 생활권내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말단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을 '프로그램'단위로 설정하여 정책을 진행할 때 중요한 단위임
- 실제 학교나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모든 교육 기관 단체들이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교육진 흥원을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전달 체제의 생명은 생활권역 내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면 이미 전문성을 담당한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찾아내서 그 주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 용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을 비롯하여 평생교육기관, 청소년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단체, 사회복지관 등이 모두 포함됨



5.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자)의 양성 및 지원

-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 단체에 현재 문화 예술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제18조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규정이 있으나 아직 국가 자격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교육과정 규정과 자격 제도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기관 단체에게 배치를 규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음
- 문화예술교육 기반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은 주로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연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 실무자의 경험적인 수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가진행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은 교수자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개발, 운영, 평가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적 행위중심의 강사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인력과는 다른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음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과 지역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요청됨
- 현재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채용되고 있는 전문 인력의 경우는 어떠 한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확신이 가지 않음
- 프랑스의 사회문화활성화 애니마테르(animteur) : 이 자격 제도는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과 가장 유사한 자격제도임.
 - 교육·문화적 활동을 행하는 모임이나 그룹 내에서 참가자 내지는 회원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애니매이션이며, 그 중심적 역 할을 담당하는 이가 애니마테르임. 즉, 사회·문화를 활성화(animation)하는 지도자의 의미에서 애니마테르라고 부르게 된 것임⁹⁾
 - 프랑스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군으로 애니마테르 자격제도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일자리로 시작된 문화예술강사 사업와 비슷한 정책취지에서 활성화되었으나 강사의 성격이 아닌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자의 성격임
- 일본의 경우는 교육청에 공무원으로 사회교육주사와 공민관에 공민관주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21세기지역사회학습센터 사업의 방과후학교

^{9) 1950}년 이전까지 사용되던 민중교육이 엘리트층으로부터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교육이라는 계몽 적 색채가 강했던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는 주체성·창조성이 강 조되는 「사회·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용어가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사전에서 애니마테 르는 영구교육(永久教育; 프랑스에서는 평생교육을 이같이 부름)의 조직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운동의 활동의 집회 시에,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사'가 있음. 이 자격 제도는 대학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이나 학교 등에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전문 인력의 역할은 평생교육 전문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평가, 교수(teaching) 하는 것이지만 주로 개발자로서의 전문 성을 요청받고 있음
- 전국에 4만 명 이상 양성되어 있으며 지역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지자체나 지역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관에 평생교육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기획, 확산되고 있음
- 자격 교과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교과목이 있으나 문화 예술적 감수성 등의 관점 등이 재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문화예술교육 강사) DB 구축 활용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영향 력이 큰데,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학습자 와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강사의 질이 교육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 따라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강사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해 강사 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사 자원의 발굴 양성

-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는 전문 강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도 강사진 확보가 어려워 프 로그램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
- 이런 문제는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총체적인 역량의 집중과 제공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분야별 지역별 강사풀(예컨대, 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DB/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 E/B)을 구축하여 강사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에서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이 필요



7. 지역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육성

- 문화예술교육은 그 특성상 프로그램의 단계별 제공이 요청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과 활동 연계성으로 인하여 학습자 집단의 동질성 유지와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학습자들을 학습동아리로 조직화해야
-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성과 축적과 학습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추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학습동아리가 본질상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도적인 틀을 갖추어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하향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오 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현재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들에 형성된 자발적 학습동아리를 각 기관 자체에서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 도록 유동적인 재정 지원과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 스웨덴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국가의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같이 학습동아리 가 스스로 하나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기획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물적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적 자원 의 제공해야.
 - 후속 모임을 추진하는 많은 학습동아리들이 적절한 교재와 자료, 강사 등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주제별 학습자료 목록을 개발 제공하거나, 체험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학습거리'를 제공하고, 요구에 맞는 강사의 섭외, 체험의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주는 것 등

8. 공공 문화예술기관·단체의 문화예술교육적 차원의 공적 책무성 부여

- 지역의 고급 문화자원들(기관·단체와 여기 속해 있는 전문인력 등)이 일반 대중과 만나면서 창작 활동과 함께 지역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 은 일자리와 주민과의 접합성을 늘리는 구조가 필요함
- 학교는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새로운 '고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선진국의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기관은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통해 자기 기관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있음.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기관단체들의 인식으로 그러한 수준에 와 있지 못함. 따라서 문화부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지역 공공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기본 사업화 하도록 정책적 가이드라인(문화예술기반시설 평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는 지역문화기반 시설들의 일부만이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에 사회교육관 운영 및 사회교육 담당자 채용 등과 같이 해당 문화예술기관의 본질적 과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화원 등 문광부 산하 공적 기반 시설의 정규 사업에 지역 학교와의 연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도록 해야
-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단원 등 공적 문화예술지도자들의 지역 학교에 대한 공적 지원 구조를 만들어 사교육화 되어 있는 방과후교육 영역에 양 질의 공적 전문 인력의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9. 모든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교육지원네트워크

-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 주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교류·협력,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교육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 더욱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마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네트워크가 존재해야
- 특히 지역의 공적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모든 지역에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 업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과 학부



¹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모,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되게 될 것

○ 이렇게 지역 자원과의 소통 구조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창조해 나가고 모든 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Culture & Arts Education for All)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임.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이 상호 개방, 교류, 협력, 지원, 연계, 융합, 역할 분담구조를 만들어 지역 주체 간에 본격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가능함.

참고문헌

- 김영현(2008).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논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pp. 65-68.
- 김춘미 외(2008). 즐거운학교 만들기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연구보고서.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7).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 서광(2008).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병찬(2003). "외국 지역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여성교육적 역할 탐색." 한국 여성평생교육회. 「여성평생교육」제8집. pp. 69-103
- 양병찬(2008). "우리 마을에서 교육메세나 만들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메세나 : 왜 기업이 학교와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문화예술교육세미나 자료집. pp. 85-87.
- 양지연(2008).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와 전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4차 포럼 자료집.
- 우주희(2008). "참여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4차 포럼 자료집.
- 우주희 외(2008). 지역사회 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영향 평가. 한국문 화예술교육진흥원.
- 이해준 외(2003). 평생교육단계에서의 인문학 활성화 방안 연구. 인문사회연구 회 연구 보고서.
- 임학순(2008).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정책 적 시사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4차 포럼 자료집.
- 임학순 외(2008).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현선(2008). "합의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이념 도출과 실행 전략의 필요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4차 포럼 자료집.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1).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프랑스 교육부 예술 교육 5개년 계획.
- 한준상 외(2003). 지역공동체 문화발전론. 원미사.



- 54 -

2009 문화예술교육 포럼

발행인 이 대 영

발행일 2009. 0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록 KACES-0950-C001

홈페이지 www.arte.or.kr

문 의 T.02.6209.5900 F.02.6209.5949

©본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